

## 제2절 유류할증료를 알고 있나요?

계속되는 유가 상승 때문에 주유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항공기도 이동할 때 유류가 필요한데, 유가가 상승하면 항공운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### 1. 항공유란 무엇인가요?

❖ 항공유는 항공기 엔진에 쓰이는 연료로서 석유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, 성분상 등유와 큰 차이가 없고, 일반적으로 등유(케로신, kerosene) 기반으로 열지 않도록 각종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되기 때문에 등유를 가공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(출처= SK Innovation).

▶ 항공유는 제트 엔진 기관을 가진 항공기에 사용되는 제트 연료(등유 성분)와 가솔린 엔진 기관을 가진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 가솔린(휘발유 성분)으로 구분됩니다.

·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항공기와 전투기는 제트 연료를 사용하며, 세스나와 같은 경비행기는 주로 항공 가솔린을 사용합니다.

▶ 이처럼 민간 항공기는 등유 타입의 항공유를 사용함에 따라 유류할증료 산정 시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지표 MOPS(Mean of Platts Singapore) 중 등유 타입의 항공유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

· 따라서 유가가 상승하면 할증료도 오르고, 반대로 유가가 하락하면 할증료도 인하하게 됩니다.

### 2. 유류할증료는 무엇인가요?

❖ 항공사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의 유류비 보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, 항공사는 유가에 따라 기본 운임을 조정하는 대신 승객들이나 화물의 기본운임에 별도로 부과하는 요금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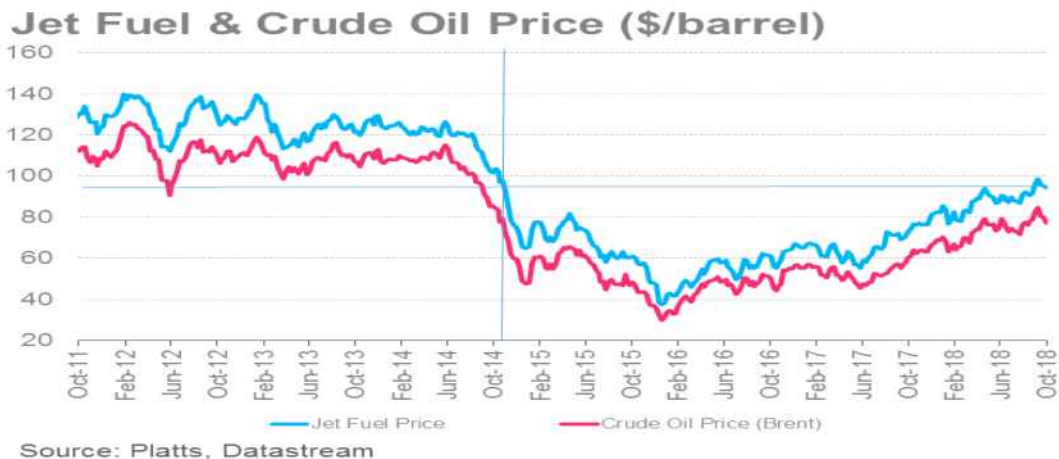
▶ 국제유가가 점점 상승하던 2004년 당시 싱가포르항공, 영국항공 등 몇몇 메이저 항공사들이 부과하기 시작하여, 지금은 대부분의 항공사가 부과하고 있

습니다.

- ▶ 비행기를 한 번 띄울 때마다 사용하는 연료는 수십만 리터이기 때문에 항공사는 유가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국제유가가 비싸질 때 어느 정도 요금을 부과해 증가한 비용을 상쇄시키기 위한 것이 유류할증료입니다.
- ❖ 우리나라 국적사의 유류할증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.
  - ▶ 국제선의 경우, 싱가포르 항공유의 1달 평균가가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며, 이후 갤런 당 10센트 추가 상승 시 유류할증료도 인상됩니다. 또한 국제선은 운항 거리별로 유류할증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.
  - ▶ 국내선은 싱가포르 항공유의 1달 평균가가 갤런 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되며, 이후 갤런 당 20센트 추가 상승 시 한 단계씩 인상하고 있습니다. 국내선은 운항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.

### 3. 유류할증료 현황

- ❖ 항공유 가격은 2014년부터 급락세를 이후, 2016년 2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며, 최근 2018년 10월에는 2014년 10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
  - ▶ 항공사들은 항공유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항공유가 저렴할 때 미리 사두는 헷징(hedging)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, 유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파악이 어려워 오히려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.



《그림 부록 8》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(MOPS)(자료=플래츠, IATA 파이낸셜 모니터링 보고서 내 자료)

- ❖ 2018년 유류할증료는 1월 3단계, 2월 4단계, 3월 5단계로 계속해서 상승하다 4월 4단계로 하락하는 듯 하였습니다. 그러나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올라 7단계를 유지하였으며, 8월에서야 6단계로 1단계 하락하였습니다.
  - ▶ 유류할증료는 2017년 2월 1단계에서 2018년 11월 기준 8단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.
    - 0단계(15.9~17.1) → 1단계(17.2~17.4) → 0단계(17.5~17.9)
      - 1단계(17.10) → 2단계(17.11) → 3단계(17.12~18.1) → 4단계(18.2)
        - 5단계(18.3) → 4단계(18.4) → 5단계(18.5) → 6단계(18.6) → 7단계(18.7) → 6단계(18.8~18.9) → 7단계(18.10) → 8단계(18.11)
- ❖ '18.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'18년 9월 16일~'18년 10월 15일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(MOPS) 가격이 배럴당 96.7달러, 갤런당 225.47센트를 기록함에 따라 11월의 유류할증료는 8단계로 책정되었습니다.
  - ▶ 현재 국내 직항 최장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를 살펴보면, 대한항공의 애틀랜타 노선으로 해당 공항대권 거리는 7,153mile(11,512km)입니다.
  - ▶ 해당 항공사의 애틀랜타 노선 유류할증료(편도 기준)는 최근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2017년 11월 19,200원에서 11월 기준 105,6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5.5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
    - '17.10 : 8,400원 → '17.11 : 19,200원 → '17.12 : 34,800원 → '18.1 : 31,900원
      - '18.2 : 45,100원 → '18.3 : 56,100원 → '18.4 : 45,100원 → '18.5 : 56,100원
        - '18.6 : 72,600원 → '18.7 : 84,700원 → '18.8 : 72,600원 → '18.9 : 79,200원
          - '18.10 : 92,400원 → '18.11 : 105,600원
    -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(USD)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 후 원화(KRW)로 제시하게 됩니다.
    - 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대권거리 기준이 다르며, 항공사 별로 부과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.
    - 예를 들어, 대한항공은 마일 단위에 따라 기준 금액을 부과하며, 500 미만, 500~1000 미만, 1000~1500 미만, 1500~2000 미만, 2000~3000 미만, 3000~4000 미만, 4000~5000 미만, 5000~6500 미만, 6500~10000 미만, 10000 이상으로 10개의 대권거리에 따른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
-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며,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(만 2세 미만)은 면제대상으로 합니다.
- 해당 항공사에서는 유류할증료 변동시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
- 따라서,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추가 납부를 하지 않으며, 반대로 유류할증료가 인하되어도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항공사가 환급해주지 않습니다.

❖ '18.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(부가세 포함)는 5,500원이었으며, 11월에는 6,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
- ▶ 국내선 유류할증료: 1,100원('17.1) → 2,200원('17.2~'17.10) → 3,300원('17.11~'18.2) → 4,400원('18.3~'18.5) → 5,500원('18.6~'18.8) → 6,600원('18.9~'18.11)

❖ 국내선·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노선 및 항공사별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항공사 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4. 서민·자영업자에게는 유류세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는데, 항공유는 유류세 인하 혜택이 없나요?

❖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정부는 2018년 11월 6일부터 2018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송용 유류세가 15% 인하되었습니다. 그러나 국제선에서 사용하는 항공유는 당초 비과세이며, 국내선 항공유는 관세 등을 포함한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번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, 항공유를 유류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5. 항공운임은 어떻게 표시되고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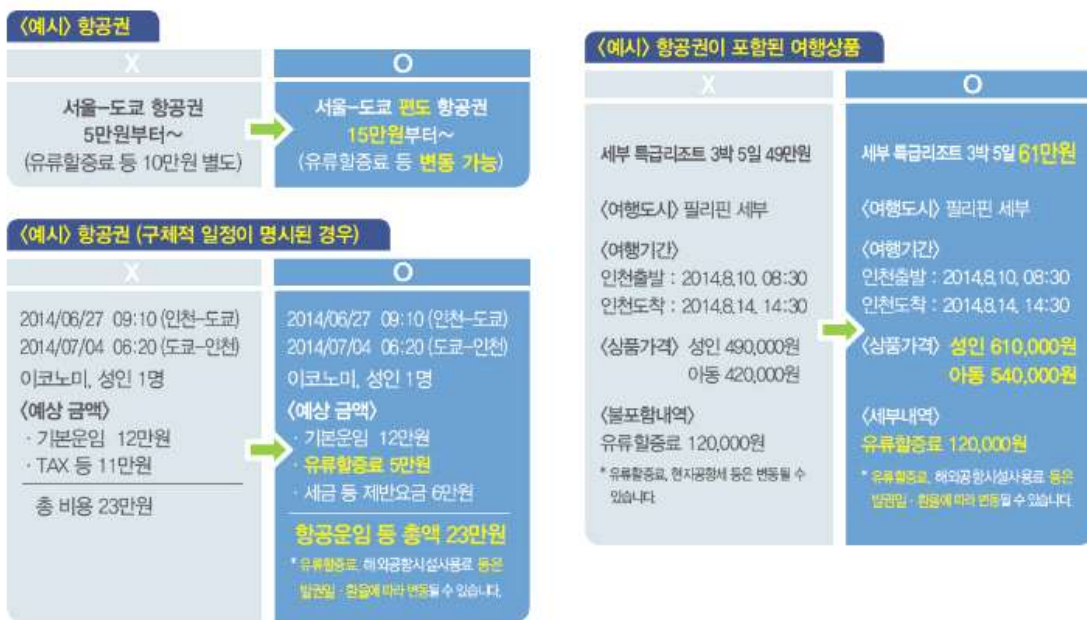
❖ 현재 항공운임은 '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'에 따라 총액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(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).

- ▶ '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'란,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표시·광고·안내시 소비자가 지불해야할 금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류할

증료, 공항시설 사용료 등이 포함된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
▶ 표시·광고·안내되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

- 항공운임 등 총액(여행상품의 경우,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 가능)
- 편도 또는 왕복인지 여부
- 유류할증료 등 변동가능 여부
- 유류할증료 금액(구체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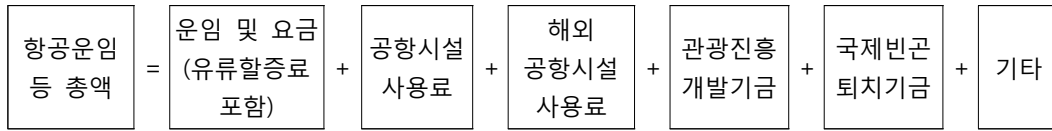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부록 9〉 ‘항공운임 등 총액’ 시행 이후 안내방법

▶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국적 항공사 (국내·국제항공운송사업자)
- 외국계 항공사 (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)
-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
- 여행업자 (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)

❖ ‘항공운임 등 총액’은 운임 및 요금, 공항시설사용료, 출국납부금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, 세부구성항목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(항공운임 등 총액)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


- ▶ ‘항공운임 등 총액’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  - 「항공사업법」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 (항공운임 + 유류할증료)
  - 「공항시설법」 제32조에 따른 공항시설사용료
  -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
  -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
  - 「국제질병퇴치기금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(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)
  -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
- ▶ 국내선의 경우 항공운임 총액은 항공운임과 유류할증료, 국내공항시설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